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1. 11. 22.>

안전확인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회사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	전자우편
	주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회사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	전자우편
	주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
안전확인 대상제품	제품명		
	기본모델명		제품정격(전기용품에 한정한다)
	파생모델명		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(생활용품에 한정한다)
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	미보유( )		* 미보유 시 안전확인신고 필요
	보유( 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(생활용품) 안전확인시험 면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안전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) 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3. 제품설명서 4.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(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) 5.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[별표 4 제2호다목3)의 경우에 한정한다] 6.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.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 8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처 리 절 차

시험접수	→	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	→	안전확인 신고서작성	→	신고내용 확인	→	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	→	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
처리기관 (시험기관)		처리기관 (시험기관)		신고인		처리기관 (인증기관)		처리기관 (인증기관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